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5누1013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김○○
피고, 항소인 ○○시장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5. 6. 18. 선고 2024구합22060 판결
변 론 종 결 2025. 9. 5.
판 결 선 고 2025. 10.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3. 1.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78,030,42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4,093,41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5,101,4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조경 및 주차장은 지방세법령에서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규정한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① 제1심판결 이유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② 피고가 이 법원에서 '예비적 항소이유'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아래 제3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2쪽 제18행부터 제3쪽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도는 2022. 12. 2.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조정 및 주차장 공사비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8조 제1항 제9호의 "정원 또는 부속시설 등을 조성·설치하는 비용"으로, 이 사건 각 휴게소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에게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통지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2023. 1. 10. 원고에게 취득세 합계 78,030,42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합계 4,093,41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합계 5,101,43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4.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2. 21. 이를 기각하였다.

나. 제1심판결 제3쪽 제17행부터 제4쪽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②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고만 한다) 제7조 제14항은 그 단서에서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위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조항은 지목이 대지인 토지 중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조성·설치된 정원 또는 부속시설 등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인데, 이 사건 조정 및 주차장 부지는 지목상 대지가 아니고, 택지공사로 준공된 토지도 아니므로, 기본적으로 위 조항이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도로법에 따르면, 이 사건 조정 및 주차장 부지는 도로에 포함될 뿐이다(이하 '쟁점 ②'라 한다).

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0행의 '이 사건 휴게소'를 '이 사건 각 휴게소'로 고친다.



라. 제1심판결 제4쪽 제21행의 '부동산등을 원시취득하는 경우'를 '법인장부 등에 의해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로 고친다.

마. 제1심판결 제5쪽 제9행의 '을 제8호증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으로 고친다.

바. 제1심판결 제6쪽 제3행부터 제14행까지(각주 부분은 삭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② 피고는,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에 의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조경 면적을 확보해야 하고, 주차장법과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조경 및 주차장은 이 사건 각 휴게소 설치 시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 주장처럼 본다고 하더라도, 의무설치 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시설이 다른 건축물의 '부속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독립하여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거나 경제적 효율을 가질 때에는 이를 '부수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 고속도로의 주변 시설로서 이 사건 조경 및 주차장이 가지는 고유의 특성 및 그 구체적인 형태에 비추어 보면, 해당 시설들은 충분히 이 사건 각 휴게소와 구분되어 독립된 경제적 효율을 가지는 시설로 평가할 수 있다. 더욱이 이 사건 조경의 경우 그 부지가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여 원고에게 설치의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사건 주차장의 경우 원고는 주변 고속도로 이용자의 편의증대를 위해 의무범위 이상으로 그 규모를 확보하여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이를 조성한 것으로도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한 행정안전부



의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3161, (2018. 12. 28.) 취득세]은 고속도로 휴게소가 아닌 공동주택 단지 내 조경과 도로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단지 내 조경과 주차장을 별도로 분리할 수도 없고, 별도로 거래의 객체가 되지도 않는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위 유권해석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사. 제1심판결 제8쪽 제9행부터 제9쪽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지방세법이 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대지 이외의 토지(전, 잡종지 등)에 신축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면서 조경 및 도로포장 공사 등을 할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여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 보아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지목변경 간주취득세가 과세되었으나, 택지(대)를 분양받아 그 지상에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조경 및 도로포장 공사 등을 할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토지의 가액이 증가하였더라도 제7조 제4항에 따른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였다. 그에 따라 택지(대) 위에 조경 및 도로포장 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도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상승하는데, 형식상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간주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어 납세자 간 조세 불형평이 발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지방세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제7조 제14항을 추가하였다.

다만 당시 개정으로 추가된 제7조 제14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垓)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였고, 이를 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하여 위와 같은 경우에도, ①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같은 항 본문)와 ②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같은 항 단서)를 세분화하였다. 이는 건축물의 건축 없이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을 조성·설치하는 경우와 건축물의 건축과 함께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을 조성·설치하는 경우에 따라 나눈 것일 뿐,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라는 공간적 요건을 전제로 하는 것은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동일하다.

결국 이와 같은 개정 전·후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의 내용을 고려하면,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 본문과 단서 모두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 위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어서,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휴게소 건물과 조경 및 주차장의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아. 제1심판결문 '별지'를 이 판결문 '별지'로 교체한다.

3. 추가판단 부분

가. 필수 공사비용의 취득가액 산입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

이 사건 각 휴게소 신축 과정에서 이 사건 주차장 주변 부지의 포장에 손상이 있었고, 위 부지 지상에 존재하던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어 해당 부분이 이 사건 주차장의 일부가 되었다. 결국 이 사건 주차장 공사비용 중 적어도 포장 내지 보수비용 및 신규



주차장 조성 비용 등은 이 사건 각 휴게소 신축공사의 특성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는 이 사건 각 휴게소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먼저 을 제10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휴게소 신축 과정에서, 이 사건 주차장 부지의 포장이 손상되었다가 재포장되었고, 위 부지 지상에 존재하던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어 해당 부분이 현재 이 사건 주차장의 일부가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보수공사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공사는 어디까지나 이 사건 주차장 공사의 일부를 이루는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주차장은 이 사건 각 휴게소의 부속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포장 관련 공사비용 등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이 사건 각 휴게소가 아니라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각 휴게소의 취득가격이라고 볼 수 없고, 이와 달리 피고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조경 부지의 간주취득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

이 사건 조경 부지 중 상당 부분은 과거 임야, 답, 구거 등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조경공사 이후 조경 부지로 전환되었고, 그 실질적 가치도 상승하였으므로, 그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조경 부지를 간주취득하였고, 결국 이 사건 조경 공사비용은 이 사건 각 휴게소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이 사건 조경 부지를 간주취득하였다'고 주장(이하 '이 부분 처분사유'라 한다)하고 있고, 이는 당초 피고가 내세운 과세처분 사유와



다른 것이므로, 처분사유의 추가 내지 변경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과세대상은 이 사건 각 휴게소의 취득인 반면,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이 부분 처분사유에 따른 과세대상은 이 사건 조정 부지의 취득이므로, 그 과세대상을 전혀 달리하고 있다. 결국 당초 처분사유와 이 부분 처분사유 사이에 과세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처분사유의 추가 내지 변경은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다는 것은 토지의 주된 용도를 사실상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의 변경이 있는지 여부는 토지의 현황이 물리적으로 변경되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상하수도공사, 도시가스공사, 전기통신공사 유무를 비롯하여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5두12756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358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조정 부지는 1971. 4. 13. 도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실상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현재까지도 그 도로구역이 변경되지 않은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조정공사로 인해 그 부지의 지목이 피고 주장처럼 변경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19

결한다.

재판장 판사 곽○○

판사 송○○

판사 박○○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임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 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垓)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 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8. 불박이 가구·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47조의2(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도로법 시행령

제45조의2(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대상)

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고속국도에 연결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휴게시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
3. 주차장
4. 졸음쉼터
5. 버스정류시설

끝.